

서기 2022년 3월 28일

# 정 관

주식  
회사

**LS네트웍스**

주식  
회사

# LS네트웍스

1949년	12월	21일	제정
1974년	2월	27일	개정
1975년	2월	27일	개정
1976년	2월	27일	개정
1976년	10월	15일	개정
1977년	2월	26일	개정
1978년	2월	25일	개정
1979년	2월	26일	개정
1980년	2월	28일	개정
1981년	2월	28일	개정
1982년	2월	26일	개정
1982년	6월	28일	개정
1983년	2월	26일	개정
1983년	12월	15일	개정
1984년	2월	25일	개정
1985년	2월	28일	개정
1985년	12월	28일	개정
1986년	2월	28일	개정
1987년	2월	27일	개정
1988년	2월	27일	개정
1990년	2월	28일	개정
1992년	2월	28일	개정
1993년	2월	26일	개정
1994년	3월	25일	개정
1994년	5월	30일	개정
1995년	2월	28일	개정
1996년	2월	29일	개정
1998년	3월	13일	개정
2002년	11월	1일	개정
2006년	2월	4일	개정
2006년	12월	29일	개정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7년	3월	29일	개정
2008년	1월	29일	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
2009년	3월	27일	개정
2009년	9월	4일	개정
2010년	3월	12일	개정
2011년	3월	24일	개정
2012년	3월	23일	개정
2016년	3월	25일	개정
2018년	3월	23일	개정
2019년	3월	22일	개정
2021년	3월	30일	개정
2022년	3월	28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성명)** 본 회사는 주식회사 LS네트웍스라 칭하며, 한글로는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영문으로는 LS Networks Corporation Limited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 외국상사 대리업
3. 자원 개발 및 판매업
4. 신발류 제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5. 섬유류 제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6. 피혁제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7. 관광호텔과 이에 부수하는 부대시설의 건설, 소유 및 운영사업의 수행
8. 사설 주차장 경영업
9. 철강금속제품, 기계금속제품 및 중기제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0. 화학제품,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1. 농·수·임·축산물의 보관, 가공, 판매 및 동 대행업
12. 스포츠용구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3. 잡화, 완구, 여행용구, 가정용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4. 방산물자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5. 건설자재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6. 양식기, 농기구부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17. 플랜트 수출업
18. 주택 신축 판매업
19. 부동산의 매매, 임대, 관리 및 시장(아케이드)운영과 음식, 숙박업에 관한 사업
20. 농수산업, 축산업 및 임산업
21. 군납업
22. 운송, 창고, 하역업
23. 해륙물품의 제조, 판매업 동 대행업
24.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업,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
25.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제품과 그 부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26. 전기전자 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자동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27. 컴퓨터 및 응용 시스템과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임대, 유지보수업
28. 소프트웨어의 제조, 도입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29. 전 각호의 기술용역 및 전기통신 공사업
30. 이동통신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역무의 제공
31. 전자제품용 소재 생산, 판매업
32. 합성수지의 제조, 가공, 판매업
33. 각종 금형의 제조, 가공, 판매업
34. 종이류 제품의 제조, 판매업 및 동 대행업
35. 화장품 판매업 및 동 대행업
36. 의약품 판매업 및 동 대행업
37. 자동차 수출입, 판매업, 중개업
38.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정비장치 제조, 수출입, 판매업
39. 자동차 정비 및 폐차업
40. 자동차 관리사업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
41. 자동차 운송, 대여, 운송알선사업, 기타의 운송사업
42. 주유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43.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
44. 충전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45. 차량용 연료 소매업, 수출입업, 판매업, 중개업
46. 보험대리 및 동 중개업
47. 종합 리스업
48. 금융업 및 신용판매 금융업, 기타 여신전문금융업
49. 스포츠 레저사업
5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51. 전자 화폐업
52. 프랜차이즈 사업
53.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
54. 교육기관, 교육시설 운영업 및 교육서비스업
55. 일반 도매 및 소매업
56. 문화예술 서비스업
57. 회원권 분양 대행업(콘도, 스포츠, 골프 등)

- 58. 모터사이클, 운동기구, 각종 자전거 및 관련 부품 제조 및 유통사업
- 59.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60. 헬스 및 케어업
- 61.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 62. 신문, 잡지 발행 및 판매업
- 63. 정기 간행물 발행업
- 64.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및 합작투자
- 65. 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사업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본 회사는 본사를 김해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지역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의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snetwork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 5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금오천원정으로 한다.

**제 6 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6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억오천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3% 이상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

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의 3(상환 우선주)**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상 5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상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6 조의 4(전환 우선주)**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6 조의 5(상환전환 우선주)**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6조의3 제②항 내지 제⑥항 및 제6조의4 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준용한다.

**제 6 조의 6(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 7 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②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2(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의 3(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의 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통주식으로,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으로

로 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일전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칠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통주식으로, 금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일전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0 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전 제②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9. 3. 22>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2021. 3. 30>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 3 장 주 주 총 회

- 제 13 조(총회의 소집 및 공고)**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일보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2조 제④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본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3 조의 2(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14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명한 이사가 총회 의장이 된다.
- 제 14 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15 조(주주의 의결권)** ①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주총회 개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6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7 조(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18 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

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 이사회 및 위원회

**제 19 조(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15명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 21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19조 제①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대표이사 등)** ①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 및 집행, 관장하며, 대표이사가 수인의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④ 대표이사의 사임, 부재 또는 기타의 유고시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본 회사의 이사중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해당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삭제, 2016.03.25.>

**제 22 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2시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23 조의 2(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감사위원회)**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삭제, 2021.03.30.>

⑤ <삭제, 2021.03.30.>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1.03.30.>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 24 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을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⑥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를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의 보수)** 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결 산

**제 27 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 28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①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⑤ 제①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①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⑥ 제⑤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  
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⑤항에 의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  
다.

**제 29 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  
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 30 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④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31 조(주식의 소각)** <삭제 2012. 4. 15>

## 제 6 장 보 칙

**제 32 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3 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부 칙

(시행일) ① 이 정관은 199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본 회사가 개정상법 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 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⑤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단, 제4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의3,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3.23.)

(시행일) 이 정관은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일(2018년 3월 2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 부 칙(2019.03.22)

(시행일) 이 정관은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일(2019년 03월 2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 6, 제7조의 4,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예정)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3.30)

(시행일) 이 정관은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03.28)

(시행일) 이 정관은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